

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 
조성에 관한 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길자 의원 발의】



2021. 6. 22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

## 조성에 관한 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### 1. 경 과

의안 제349호로 2021년 6월 7일 김길자 의원 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

다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
라.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사항(안 제6조)

마. 기초조사,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8조)

바.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 ~ 제10조)

사.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(안 제11조)

아. 포상(안 제12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.

다. 입법예고(2021. 6. 4. ~ 6. 8. / 5일 간) : 의견없음.

## 5. 검토의견

○ 본 건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임.

○ 주요 내용은

- 조례명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」이고 13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.
-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
-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
-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.
-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초조사, 교육 및 홍보, 협력체계 구축 및 재정지원 등을 규정하였고
- 안 제11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
- 안 제12조에서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공적이 있는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- 2021년 5월 말 기준 우리구 등록장애인 수는 14,542명으로 우리구 주민등록 인구 377,577명의 3.9%임.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정책 추진 및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, 상위법령에 저촉됨 없이 규정되었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장애인복지법

**제9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)**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,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,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,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,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##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

**제8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**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,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·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.